

기술사법 관련 고시 개정

지난 2월 10일 기술사법 관련 고시 중 '국제기술사 자격 요건 및 심사기준 고시' 등 3개 고시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.

1. 개정 고시

- 가.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(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-10호)
- 나. 기술사 신고 등의 업무 위탁요건 및 위탁사무 처리기준 고시
(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-11호)
- 다. 기술사 신고 등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고시
(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-12호)

2. 개정 주요내용

- 가. 「기술사법 시행령」(2010. 10. 13 시행)의 개정에 따라 기술사의 근무처 · 경력 및 학력 등의 "신고"를 "신고의 수리"로 바꾸는 등 관련 고시의 조항 정비
- 나. 「기술사법 시행령」(2010. 10. 13 시행)의 개정에 따른 "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심사 위원회"가 폐지되면서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"국제기술사자격심사전문위원회"가 수행 등 관련 고시의 조항 정비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

개정안
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「기술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
다) 제5조의2,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
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
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의 심사와 자격인정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국제기술사 자격요건
과 심사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기준은 법 제5조의2, 영 제8조 및 규칙 제2조에 따라 기술사에 대한 국제기술사자격의 심사 및 자격인정증명서 발급에 적용한다.

제3조(정의)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제1조(목적) -----

----- **제4조의2**

제2조(적용범위) -----

----- **제4조의2**

제3조(정의) -----

현 행

개 정 안

1. “국제기술사”라 함은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「기술사 법시행령」 제8조의 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심사 위원회(이하 “심사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사 거쳐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.

2. (생략)

제6조(심사기준) (생략)

1~5. (생략)

6. (생략)

신청서에 첨부한 <붙임 6>의 “교육훈련 이수확인서”(규칙 [별지 제4호 서식])에 따라 국제기술사가 등록 또는 재등록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영 제13조제2항 및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준에 따라 150학점의 교육훈련(기술사 윤리 포함)을 이수하였는지를 심사·확인 한다. 이 경우 법 제20조 및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 교육훈련 실적의 검토와 교육훈련이수 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기술사회가 발행하는 <붙임 7>의 “교육훈련 이수확인증”(규칙 [별지 제10호 서식])을 교육훈련 이수학점 확인에 활용할 수 있다.

1. 위탁 대상 업무(기술사법시행령 제26조 제3항 각 호의 업무)

가. 기술사의 근무처·경력 및 학력 등의 신고

나.~마. (생략)

(신설)

바. 기술사 교육훈련 실적의 검토와 교육훈련이수 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업무

사. 국가간 기술사 자격의 상호인정에 관한 심사

1. ----- 국가간 협약 등에 따른 기술사 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「기술사법」 제5조의 2 -----
-----.

2.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심사기준) (현행과 같음)

1~5. (현행과 같음)

6. (현행과 같음)

-----<붙임 9> “국제기술사 계속교육 학점인정기준”에 따라 150학점의 교육훈련(기술사 윤리 포함)을 이수하였는지와 이수학점에 <붙임 8> “교육훈련의 종류·내용 및 인정기준”에 따른 기본 교육 12학점과 전문교육 12학점이 각각 포함되어 있는 지-----.

1. 위탁 대상 업무(기술사법시행령 제26조 제3항 각 호의 업무)

가.----- 의 수리

나.~마. (현행과 같음)

바.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사유의 검토 및 기간 인정에 관한 업무

사. 교육훈련 실적의 검토와 교육훈련이수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업무

아. 국제기술사 자격인정을 위한 심사 요청의 수리-----

항목	요건	항목	요건
1. 운영인력	가. (생략) 나. ----- 실적 검토 및 ----- 다. <u>국제기술사자격상호인정에</u> <u>관한 심사,</u> -----	1. 운영인력	가. (현행과 같음) 나. ----- 실적 검토 및 ----- 다. 국제기술사자격인정을 위한 심사요청의 수리, -----
	- 아 래 -		- 아 래 -
	----- 교육훈련		----- 교육훈련 을 받을 수 없는 사유의 검토, 실적 검토 및 -----

1.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수탁기관

위탁할 업무의 내용

(기술사법시행령 제26조 제3항 각호의 업무)

- 가. 기술사의 근무처·경력 및 학력 등의 신고
나.~마. (생략)

〈신설〉

바. 기술사 교육훈련 실적의 검토와 교육훈련
이수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업무

사. 국가간 기술사 자격의 상호인정에 관한
심사 및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 발급
에 관한 업무

1.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수탁기관

위탁할 업무의 내용

(기술사법시행령 제26조 제3항 각호의 업무)

- 가. 신고의 수리

나. ~마. (현행과 같음)

반.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사유의 검토 및
기간 인정에 관한 업무

사. 교육훈련 실적의 검토와 교육훈련이수학
인증의 발급에 관한 업무

아. 국제기술사 자격인정을 위한 심사 요청의
수리 및

제1호 이사호

2011년도 제1회 이사회는 2월 23일(수) 11:00 한국기술사회 종합교육원 제2강의실에서 개최되었다. 개최결과는 아래와 같다.

▶ 안건

● 보고안건

1. 제1호 안건 : 2010년도 제6회 이사회 회의록 – 원안 의결 접수
 2. 제2호 안건 : 제10회 기술사의 날 및 제47회 정기총회 준비 – 원안 의결 접수

● 의결안건

1. 제1호 안건 : 한국기술사회 VE자격인증위원회 설치 및 구성(안) – 원안 의결 승인
 2. 제2호 안건 : 2010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(안) – 원안 의결 승인